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	접수일자			
청구인	성명		수험번호			
주 소			1	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				
반환청구서류						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청구합니다.	관한 법률」제11조 및	! 같은 법 시행령	제2조 및 제4조	에 따라 위와 [같이 채용서류9	의 반환을
					13	0] 0]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 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 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